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규정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46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5
1.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및 스포츠윤리 재교육의무 강화	5
2. 폭력 관련 전문체육선수의 출전금지 조치 강화	12
3.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실효성 강화	16
4. 징계정보시스템의 징계정보 이용 범위 확대	20
5. 부칙	24
※ 참고자료	26
1. 벌금형 결격사유(직무관련 범죄) 관련 입법례	26
2.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현행법 조문	2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6. 6. 15.
3. 회 부 일: 2026. 7. 1.

II. 제안이유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수립을 통해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III. 주요내용

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의5)

- 1) 현행법은 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지도자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등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없게 되므로 선수 폭행을 엄벌하는 수단의 하나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른 중범죄와 결격기간의 균형을 맞추고,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만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스포츠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나.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을 모든 체육지도자로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2조)

- 1)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그런데 지도업무 종사여부 파악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과도하며 재교육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 3) 반복되는 스포츠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를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전체로 확대하고,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재교육을 받으면 다시 자격이 회복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 재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교육 관리의 실효성도 높이려는 것임.

다. (성)폭력 등 관련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 강화(안

제14조의4)

- 1)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전문체육선수등(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법적 제약 없이 체육 현장에서 활동함에 따라 체육인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 이를 위해 기존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금지 등 조치 조항(제47조 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게 될 경우(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와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등)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의 대회 출전 제한 등을 추가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체육계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 강화(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55조)
- 1) 스포츠윤리센터의 접수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당사자, 관계자 등에 요구된 자료의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조사의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 2)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체육단체의 별도조사 등을 통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이중 절차 진행 및 결론 상충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스포츠윤리센터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시작을 통지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을 조사 종료 시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복제재 및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의 결격사유 확인 제도 개선(안 제18조의14 신설)

1)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국가대표·전문체육팀·학교운동부 선발·배치, 경기인 등록 및 체육대회 출전 등에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의 징계 이력 등 결격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결격자가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의 징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IV. 검토의견

1.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및 스포츠윤리 재교육의무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①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폭행의 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② 모든 체육지도자에게 스포츠윤리교육의 재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며,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u>아니한</u> 사람	5. ----- ----- ----- ----- ----- ----- ----- <u>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u>

6. (생 략)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 · 기간 · 내용 · 방법 ·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람

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지도자는 -----

-----.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체육지도자는 학교·직장·지역사회·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임. 체육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¹⁾, 체육단체·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최장 1년간 자격이 정지됨.

한편,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폭행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²⁾되고 형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

1)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생 략).

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2)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자격이 정지됨.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세부기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서면경고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그런데 ① 실제 폭력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벌금형 선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부재하여 폭력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고, ② 스포츠윤리교육의 재교육 대상자가 ‘체육단체·학교 등에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로 한정되어 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선수 대상 상해·폭행으로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체육지도자도 5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반복되는 스포츠폭력을 근절하고, ② 스포츠윤리교육의 재교육 의무 대상자를 전체 체육지도자로 확대하고 미수강 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여 재교육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대비표]

구분	관련 조문	현행	개정안
결격사유	제11조의5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좌동)
		-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취소·정지	제12조,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좌동)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 (최장 2년간 자격정지) - 1차위반: 자격정지 9개월 - 2차위반: 자격정지 18개월 - 3차위반: 자격정지 2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취소)
스포츠윤리교육의 재교육 의무대상 확대 · 자격정지	제11조의6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약 1만 6,600명)	모든 체육지도자 (약 30만 8,000명)*
		스포츠윤리교육의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최장 1년간 자격정지) - 1차위반: 서면경고 - 2차위반: 자격정지 6개월 - 3차위반: 자격정지 1년	스포츠윤리교육의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즉시 자격정지, 재교육 시 자격회복)

*스포츠지도사 296,350명 / 건강운동관리사 749명 /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10,819명
(2025년 말 기준, 1인이 복수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금형 확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과 관련하여, 형사사법 실무상 상해·폭행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보다 벌금형 처분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³⁾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스포츠 현장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별 범죄행위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 정도와 관계없이 경미한 소액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되고 일률적으로 5년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지는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은 스포츠폭력행위 근절이라는 공익적 효과와 함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통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⁴⁾.

둘째, 스포츠윤리교육의 재교육의무 강화와 관련하여, ① 체육단체·학교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체육지도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 ② 현행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정지하는 방식에서, 수강 여부에 따라 자격 정지·회복이 자동 연동되는 구조로 정비하는 경우 재교육 이수 관리의 효율성

3)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기소 사건 중, 약식재판 청구 80.3%, 공판 청구 19.7% 차지(검찰, 「2025 범죄분석」, 2024년 기준)

※ 약식재판: 벌금·과료·몰수형에 한정, 징역·금고 등 자유형 선고 불가

공판: 징역·금고 등 자유형 및 벌금 선고 가능

4) [참고자료 1] 벌금형 결격사유(직무관련 범죄) 관련 입법례

형사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은 범죄와 해당 범죄자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려는 목적 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년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마575).

상해·폭행죄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 입법례는 많지 않으나, 「국가공무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는, ① 액수와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확정되면 일괄적으로 자격을 정지시키는 경우, ②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정지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입법형식을 택하고 있음.

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벌금형 결격사유 신설을 통해 반복되는 스포츠 폭력행위를 차단하고, ② 재교육 의무 강화를 통해 재교육 대상자 확인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체육지도자의 윤리·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 개정안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임.

2. 폭력 관련 전문체육선수의 출전금지 조치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전문체육선수등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학대 범죄, 상해·폭행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경기대회 출전 등의 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각 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u>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u>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신 설>	1. <u>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u>
<신 설>	2. <u>제11조의5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u>
<신 설>	3.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u>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

현행법은 전문체육선수등⁵⁾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는 등 승부조작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동경기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있음⁶⁾.

그런데 전문체육선수등이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는 경우, 특히 성폭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범죄 및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전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중대 범죄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금고 이상의 형, ② 성폭력 및 학대범죄, ③ 상해·폭

5) 전문체육(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6)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행 범죄⁷⁾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출전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중대 범죄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기 출전금지 조치는 전문체육선수등의 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문체육선수등’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되며, 출전금지 조치가 각 주체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과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바 각 주체에 대한 출전금지 조치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행정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위법성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폭력범죄로 소액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기간 출전이 금지될 수 있는바⁸⁾, 동 사항에 대하여는 스포츠폭력행위 근절이라는 공익적 효과와 함께 운동경기대회 출전 금지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출전금지 조치를 통해 범죄 피

7) 개정안 제11조의5제5호는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를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4조의4제3호의 출전금지 조항은 행위 상대방을 선수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8) 특히, 개정안 제14조의4제3호가 출전금지 사유가 되는 폭력 범죄의 상대방을 ‘선수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전문체육선수등이 일반인과의 우발적인 단순 시비나 쌍방폭행에 휘말릴 경우 형사합의 과정에서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노출될 수 있음.

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체육계 폭력 무관용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② 해외 주요국도 범죄 이력에 따른 직업·활동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임.

3.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실효성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에게 14일 이내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②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며, ③ 조사가 개시되어 체육단체에 통지된 경우 해당 단체는 내부 징계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및 제55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u>요구</u> <후단 신설>	2. ----- ----- ----- <u>요구.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제18조의6(조사개시 통지에 따른 징계 등 절차의 정지) ① 스포츠윤리센터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

는 제18조의5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해당 사건에 관한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단체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단체는 해당 사건에 관한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경우 그 기간은 관련 징계 시효에서 제외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

1. 1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법상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며, 관련 당사자⁹⁾·관계자 및 관계기관 등(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 출석·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¹⁰⁾.

그런데 ①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제출 이행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조사의 강제력이 부족하며,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조사대상 체육단체의 징계절차 병행에 따른 절차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에게 14일 이내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조사 거부·방해·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조사 지연을 방지하고, ②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대상 체육단체의 징계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절차적 혼선 및 중복 조사를 차단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자료제출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 간 중복 진행을 방지하여 사건이

9)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의 신고자, 피해자 및 피신고자

10) [참고자료 2]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현행법 조문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 내용 중 체육단체 징계절차 정지(안 제18조의6)와 관련하여, ①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② 체육단체는 조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징계 또는 문책 등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는데,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체육단체에 종료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절차 정지 기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¹¹⁾.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모든 사건의 조사 개시 사실을 체육단체에 통지할 경우 신고자와 피해자 신원 노출 및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한하여 통지하도록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1) 이와 관련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등에서도 조사를 시작한 때뿐만 아니라 마친 때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징계 절차 정지 기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징계정보시스템의 징계정보 이용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채용 계약 또는 체육대회 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으로 하여금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수·체육지도자 등의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3, 제18조의14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생략)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채용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u>	<u><삭 제></u>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 ----- <u>요청</u> <u>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등에</u> ----- ----- ---
<u><신 설></u>	<u>제18조의14(징계정보시스템의 활용 등)</u>

①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 또는 체육대회 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이하 “선수등”이라 한다)의 징계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등 징계 시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고, 채용 계약 시에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정보의 이용 범위가 선수등과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채용 이후 대회 출전 등 실제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징계 전력자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징계정보의 이용 범위를 대회 출전 단계로 확대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스포츠 현장 참가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스포츠 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18조의14제2항은 채용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으로 하여금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같은 조 제1항12)에서 직접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징계 이력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문구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징계 정보 이용 범위를 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발 등으로 확대하는 경우 결격자가 체육 현장에서 활동

12) 현행법 제18조의13제4항 내용과 동일함.

하는 것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수 있으므로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한 안 제18조의14제3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바 법률 준수 의무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준수 의무를 따로 규정할 입법 실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부칙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내용 중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신설(안 제11조의5), 폭력 관련 전문체육선수 출전금지 사유 신설(안 제14조의4)과 관련하여, 경과 조치에 관한 조문을 두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경우,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즉시 취소되거나 출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 또는 출전금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둘째, 스포츠윤리교육의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안 제11조의6)과 관련하여, 법 시행 즉시 미수강 체육지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격 정지를 적용하는 경우 체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현행법상 재교육 주기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문의 시행일을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재교육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1] 벌금형 결격사유(직무관련 범죄) 관련 입법례

○ 벌금형 하한을 규정한 사례

법률	결격사유	관련 조문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동일)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u>300만원 이상의 벌금형</u>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u>100만원 이상의 벌금형</u> 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CCTV 조작범죄, 명의대여 등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제16조(결격사유)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u>300만원 이상의 벌금형</u>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단체 임원)	유기·학대, 횡령·배임 등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u>100만원 이상의 벌금형</u>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벌금형 하한을 규정하지 않은 사례

법률	결격사유	관련 조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해·폭행 등의 범죄로 벌금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u>벌금형의 선고</u>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u>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u>,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7조 및 제268조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	제6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전자격)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경비원)	범죄단체조직, 강간·추행 등 범죄로 벌금형(10년) · 절도·강도범죄 및 경비업법 위반 범죄로 벌금형(5년) · 상해·폭행죄로 벌금형 선고받는 경우 5년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금지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⑥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4조,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
--	--	--

○ 벌금형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유사 직종 사례

법률	결격사유	관련 조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구조사)	금고 이상의 실형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금고 이상의 실형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참고자료 2]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현행법 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⑧ (생략)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5. 삭제

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 ~ ⑤ (생략)